

부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62730 판결 [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11.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가소669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부산울산 취재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우체국에서 일반통상 우편물 감액요건을 변경하여 우편물을 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새로운 양식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여 D에게 프로그램 개발자 소개를 부탁하였다.

다. 이에 D는 2019. 2. 20. 피고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금은 2,700,000원(계약금은 그 중 1,800,000원), 개발완료일은 2019. 3. 31.로 정하여 피고가 새로운 양식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9. 2. 21.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1,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기존 회원DB를 새로운 회원DB로의 변환, 홈페이지 방식으로 된 업무용프로그램 구성, 띠지와 지로로 인쇄할 수 있는 DB관리 프로그램구성 및 양식지 출력프로그램과 연동 가능한 엑셀파일 출력기능 등을 개발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제1의 라.항에 더하여 지로를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1,800,000원을 반환하고, 추가로 손해배상금 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지로출력 프로그램과 연동되도록 회원DB를 엑셀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이 사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될 뿐이고 지로 출력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합의한 개발 내용에 지로 출력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개발범위를 명확히 기재한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피고는 ‘제가 출력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엑셀형태로 출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포맷을 웹방식으로 전환하고, 출력 가능한 엑셀로 변환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발의 요점입니다. 지로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자 교육까지 한 것으로 보아 일응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개발 업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와 분쟁이 발생한 후 원고에게 추후 지로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겠다고 제안한바 있으나 이는 당초 계약 내용에 지로출력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D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잔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의 범위 외의 사항도 진행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준서, 판사 권현영, 판사 조윤정